



포항중성리비를 통해 본 麻立干시기 신라의 분쟁처리 절차와 六部체제의 운영

Dispute settlement process and operation of Six Bu(六部) System in Maripgan Period(麻立干時期) of Silla Dynasty through Pohang Jungseongribi(浦項中城里碑)

저자 (Authors)	노중국 Noh Choong-Kook
출처 (Source)	한국고대사연구 59 , 2010.9, 57-94 (38 pages) The Journal of Korean Ancient History 59 , 2010.9, 57-94 (38 pages)
발행처 (Publisher)	한국고대사학회 Society for Korean Ancient History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1537011
APA Style	노중국 (2010). 포항중성리비를 통해 본 麻立干시기 신라의 분쟁처리 절차와 六部체제의 운영. 한국고대사연구, 59, 57-94.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210.178.101.*** 2020/03/19 14:13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포항중성리비를 통해 본 麻立干시기 신라의 분쟁처리 절차와 六部체제의 운영

노중국*

- I. 머리말
- II. 비문의 판독과 건립연대
- III. 분쟁처리 절차와 증거
- IV. 六部體制의 운영과 지방 지배
- V. 경위-외위체제의 정비 : 맺음말에 대신하여

국문초록

본비의 건립연대의 기준은 辛巳年이라는 干支이다. 그리고 1행 6번째 글자는 '只'자가 아니라 '申'자라는 사실과 2행 11번째 글자는 '德'자로 확정하기 어렵다는 사실 및 六部に 壹伐이라는 새로운 관명이 보인다는 사실 등에 근거하면 본 비의 건립 연대는 441년이 된다.

본 비의 내용은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보여준다. 먼저 중앙에서 교를 내리자 몇

* 계명대학교 인문대학 사학과 교수

대표 논저: 2010 『백제사회사상사』, 지식산업사; 2010 「금석문·목간 자료를 활용한 한국고대사 연구 과제와 몇 가지 재해석」 『한국고대사연구』 57; 2009 「백제의 救恤·賑貸 정책과 '佐官貸食記' 목간」 『白山學報』 83.

사람이 분쟁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밝힌 후 중앙에서는 使人을 파견하여 분쟁 지역 출신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빼앗은 자인 豆智沙干支宮 등에게 빼앗은 것을 빼앗긴 자인 牟巨伐喙 作民沙 干支에게 되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리고 차후 이 판결에 이의를 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것이 중심 내용이다.

중성리비는 마립간 시기에 신라의 육부체제 운영 모습을 보여준다. 육부체제는 나물마립간대에 성립되었고 눌지마립간대에 오면 왕권의 강화와 더불어 탁부와 사탁부 중심의 운영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아간지, 사간지 등의 관등은 탁부와 사탁부 출신자만이 지닐 수 있었고 나머지 4부의 長은 干支를 칭하였다. 본 비에는 부 간지 휘하에 두어진 일별이 보이는데 이를 외위 조직과 연계시켜 보면 일별 이외에도 일척, 피일, 아척 등도 두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관명은 외위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部官으로 부르기로 한다.

부의 내부 분화의 진전은 부의 유력자들의 수를 증가시켰고 이들 상호간의 서열을 정하기 위해 4부에 한해 간지를 분화시켰다. 이 과정에서 간지는 重간지, 三干支 등으로 분화·격상되었으며 봉평비에서 보듯이 오간지까지 분화되었다.

마립간 시기 신라의 영역은 왕의 직할지와 부의 干支가 주관하는 지역으로 크게 구분된다. 왕의 직할지와 부의 간지가 주관하는 촌에는 村干支-壹金知라는 지배조직이 설치되어 있었다. 이를 村干으로 부를 수 있다. 왕은 자신의 직할지에는 도사를 파견하여 지배하였고 여타 지역은 부의 간지가 部官을 통해 그 지역의 일을 처리하였다. 이때 촌간은 도사나 부관이 각 지역을 지배하는데 보좌역할을 하였다.

봉평비단계는 신라의 관등이 경위와 외위로 정비된 것을 보여준다. 경위는 종래의 아간지, 나마, 사지 등을 분화·격상시키는 방법과 육부의 장 아래에 두어졌던 일별, 일척, 피일 등에 간지를 붙여 격상시키는 방법으로 정비되었다. 외위 역시 두 방향에서 정비되었다. 하나는 육부 간지 아래에 있던 일별-일척-피일 등을 지방민이 지나는 관등으로 바꾸어 격하시킨 것이고 다른 하나는 수장을 지칭하는 간지를 분화·격상시킨 것이다. 이리하여 경위 17관등과 외위 11관등이 정비된 시기는 521년의 사실을 전하는 『양서』, 신라전에 子賁旱支(이벌찬)와 齊旱支(잡찬)가 보이고 있는 사실과 연계시켜 볼 때 냉수리비가 만들어진 503년에서 521년 사이로 볼 수 있겠다.

주제어 : 아간지, 일별, 경위, 외위, 촌관, 부관, 직할지, 증언

I. 머리말

2009년 4월에 포항시 흥해읍 중성리에서 신라비가 새로 발견되었다. 새겨진 글자는 먼 옛날에 떨어져나간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판독되고 있다. 이 비의 내용은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보여주고 있다. 1989년에 출토된 영일냉수리신라비와 비교하면 상통하는 부분도 있지만 새로운 내용도 많이 담고 있다.

이 비가 발견된 후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본 비의 판독문과 냉수리를 비롯한 신라 중고기 비석들의 판독문을 하나로 묶어 『포항 중성리신라비』를 발간하고, 본 비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해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이때 모두 6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¹⁾ 이후 한국고대사학회에서도 포항시의 협찬을 받아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는데 그 성과는 『한국고대사연구』 56집에 특집으로 수록되었다.²⁾

두 번에 걸친 학술발표회를 거치면서 비문의 글자 판독과 비문의 내용 및 성격에 대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혔다. 그러나 본 비가 만들어진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으며, 部的 성격과 내용 파악에도

1) 문화재청·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09 『포항 중성리신라비』, 발견기념 학술심포지엄에 수록된 논문은 다음과 같다. 김보상, 「포항중성리신라비의 발견 경위 및 향후 과제」; 차순철, 「포항 흥해지방의 역사, 고고학적 고찰」; 선석열, 「포항중성리신라비의 금석학적 위치」; 권인한, 「포항중성리신라비의 어문학적 검토」; 이우태, 「포항중성리신라비의 내용과 건립연대」; 고광의, 「포항중성리신라비의 서체와 고신라 문자 생활」.

2) 한국고대사학회, 2009 『한국고대사연구』 56집 특집에 수록된 논문은 다음과 같다. 이문기, 「포항중성리신라비의 발견과 그 의의」; 배용일, 「포항중성리신라비의 발견 경위와 고대의 포항과 흥해」; 전덕재, 「포항중성리신라비의 내용과 신라 6부에 대한 새로운 이해」; 강종훈, 「포항중성리신라비의 내용과 성격」; 하일식, 「포항중성리신라비의 신라 관등제」; 이영호, 「흥해지역과 포항중성리신라비」.

여전히 견해 차이가 있다. 필자는 비문의 내용 분석을 통해 본 비가 만들어진 시기를 추정하고 그 토대 위에서 마립간시기 신라 六部체제의 지배구조와 운영에 대해 몇 가지로 정리해 두기로 한다.

II. 비문의 판독과 건립연대

1. 비문의 판독과 문단 나누기

본 비가 발견된 후 몇 차례에 걸쳐 연구자들에 의한 판독 작업이 이루어졌다. 필자도 경주문화재연구소가 주관한 1차 판독회에 참여한 바 있으며, 그 후 다시 비를 세밀히 관찰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를 바탕으로 필자의 판독문과 문단 나누기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필자의 판독문」

- I. 辛巳△△△中折盧^{△△△△△△}
- II. 喙部習智阿干支沙喙斯△智阿干支
- III. 教沙喙尔抽智奈麻喙部本智奈麻本牟子
- IV. 喙沙利夷斯利白爭人喙評公斯弥沙喙夷須牟旦
- V. 伐喙斯利壹伐皮朱智本波喙柴干支弗乃壹伐金評
- VI. △干支祭智壹伐使人奈蘊毒只道使喙念牟智沙
- VII. 喙鄒須智世令于居伐壹斯利蘊豆古利村仇鄒列支
- VIII. 干支比竹休壹金智奈音支村卜岳干支走斤壹金知
- IX. 珍伐壹昔云豆智沙干支宮日夫智宮奪尔今更還
- X. 牟旦伐喙作民沙干支使人果西牟利白口若後世更
- XI. 遵人者与重罪典書与牟豆故記
- XII. 沙喙心刀哩△

「문단 나누기」

- 0. 辛巳△△△中折盧△△△△△喙部習智阿干支沙喙斯△智阿干支教
- 0. 沙喙尔抽智奈麻喙部本智奈麻牟车子喙沙利夷斯利白爭人喙評公斯弥沙喙夷須牟旦
伐喙斯利壹伐皮朱智本波喙柴干支弗乃壹伐金評△干支祭智壹伐
- 0. 使人奈蕪毒只道使喙念牟智沙喙鄒須智世令于居伐壹斯利蕪豆古利村仇鄒列支干
支比竹休壹金智奈音支村卜岳干支走斤壹金知珍伐壹昔云豆智沙干支宮日夫智宮
奪尔今更還牟旦伐喙作民沙干支
- 0. 使人果西牟利白口若後世更善人者与重罪
- 0. 典書与牟豆故記
- 0. 沙喙心刀哩△

2. 건립 연대

본 비의 건립연대를 추정하는데 일차적인 단서는 1행의 辛巳이다. 이 신 사년을 대다수의 연구자들은 501년으로 단정하거나 501년에 무계를 두고 있지만,³⁾ 441년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도 있고,⁴⁾ 양자의 가능성을 모두 열어 두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⁵⁾ 501년 설에서는 1행 6번째 자를 ‘只’자로, 9번째 자의 △은 葛자의 첫 획만 남은 것으로, 2행 11번째 자를 ‘德’자로 읽었다. 이를 근거로 1행의 ‘只折盧葛(文王)’과 2행의 ‘斯德智阿干支’를 냉수리비의 ‘至都盧葛文王’과 ‘斯德智阿干支’와 동일 인물로 파악하였다. 두 사람이 동일 인물이므로 중성리비의 연대는 501년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이 성립하려면 먼저 ‘只’자와 ‘德’자의 판독에 대해 異論이 없어야 한다. 그러나 1행 6번째 자는 只자가 아니다. 비록 내려 굽는 획이 가운

3) 이우태, 앞의 논문, p.84. ; 고광의, 앞의 논문, p.112. ; 전덕재, 앞의 논문, p.125 ; 하일식, 앞의 논문, p.180. ; 이영호, 앞의 논문, pp.231~232.
4) 강중훈, 앞의 논문, p.166.
5) 권인한, 앞의 논문, pp.72~73 ; 이문기, 앞의 논문, p.54.

데를 관통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아래로 직선으로 내려 그어진 것만은 분명하며 또 본 비문에는 획이 정확하게 그어지지 않은 사례도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6행 13번째의 只자는 밑변의 획이 분명히 八자의 획처럼 되어 있어 1행 6번째 자의 내려 그은 획과는 분명히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글자는 中자임이 분명하다. 다음 1행 9번째 글자는 ㄹ만 보인다. 이를 葛자로 본 것은 1행 6번째 글자를 只折盧葛文王에서 推讀한 것에 불과하며 ㄹ변을 가지는 글자는 여러 글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2행 14번째 자의 글자는 ‘德’자로 확정하기 어렵다.⁶⁾

1행 6번째 자가 ‘只’자가 아니면 1행의 인명은 ‘只折盧’가 될 수 없고, 2행 14번째 자가 ‘德’자로 확정하기 어렵다면 2행의 인명은 ‘斯德智’가 될 수 없으므로⁷⁾ 본 비의 두 사람은 냉수리비의 至都盧 및 斯德智와는 다른 인물이 된다. 따라서 두 비의 인물이 동일 인물이라는 전제 하에서 본 비의 건립 연대를 501년으로 보는 설은 성립할 수 없다. 필자는 비문의 내용 검토를 통해 건립 연대를 추정해야 한다고 본다.

본 비의 내용은 냉수리비와 유사한 점이 있으면서도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첫째, 六部를 표기할 때 본 비에서는 喙를 붙이기도 하고 붙이지 않기도 하는 등 일관성이 없지만 냉수리비에서는 모두 탁을 붙이지 않아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 일관성의 측면에서 보면 본 비는 냉수리보다 빠르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왕경 육부의 하나인 牟巨伐喙과 本波喙에는 干支 외에 壹仗이라는 官名이 새로 보이지만 냉수리비에는 보이지 않는다. 셋째, ‘豆智沙干

6) 필자는 경주문화재연구소가 주관한 1차 판독회 때와 그 후 실물 비와 탁본 및 사진 등을 자세히 관찰한 결과 이 글자는 ‘使’로 판독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본 판독문에서는 △로 처리하였다.

7) 설혹 ‘德’으로 읽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본 비의 ‘斯德智’와 냉수리비의 ‘斯德智’는 斯의 표기 방법이 다르므로 동일 인물로 볼 수 없다는 지적(강종훈, 앞의 논문, pp.146~147)도 유념해야 할 것이다.

支宮日夫智宮'에서 보듯이 '宮'자가 왕이 아닌 사람에게도 사용되고 있다. 넷째 본 비에는 촌의 유력자를 干支로만 표기하고 있는데 반해 냉수리비에는 村主가 干支를 지닌 것으로 나온다. 촌주라는 직책은 재지세력들이 관직체계 속에 편제되어 간 것을 보여준다.

두 비에 보이는 이러한 변화는 불과 2년 만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즉 냉수리비의 내용은 본 비가 만들어진 후 상당한 시간이 흐르면서 생겨난 변화들이 반영된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필자는 본 비의 건립연대를 441년(눌지왕 25)으로 보는 바이다.

Ⅲ. 분쟁 처리 절차와 증거

1. '敎'와 '白'의 주어 문제

중성리비의 전체적인 내용은 분쟁처리 절차에 대한 것이다. 즉 어떤 분쟁이 생기자 이를 처리하도록 敎가 내려지고, 다음으로 분쟁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밝히고, 다음으로 중앙에서 파견된 사람이 명령을 내려 빼앗은 것을 되돌려 주도록 하고, 다음으로 후에 뒷말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절차는 敎, 白, 令, 云, 奪, 還, 白口, 与, 記 등과 같은 動詞에 의해 구성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비문의 해석에는 이러한 동사의 주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敎의 경우 2행의 喙部 習智 阿干支와 沙喙 斯△智 阿干支가 주어가 된다. 이에 대해서는 연구자들 사이에 이론의 여지가 없다. 敎의 내용은 비문 전체에서 미루어 볼 때 어떤 분쟁을 해결하라고 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다음 白의 주어에 대해 本牟子로 보는 견해가 있다. 여기에는 교를 내리게 되면 당연히 교를 받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였다. 그래서 沙喙尔抽智奈麻喙部本智奈麻까지를 교를 받는 자로 파악하고,⁸⁾ 本牟子

는 감시자 또는 조사자를 말하는 것이므로⁹⁾ ‘白’의 주어로 본 것이다. 그러나 교를 내리게 되면 당연히 교를 받는 사람이 기술되어야 한다는 것은 선입견에 불과하다. 냉수리비를 보면 前世二王과 此七王等이 교를 내렸지만¹⁰⁾ 이 教를 받는 사람은 명기되어 있지 않다. 봉평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¹¹⁾ 이에 근거하여 필자는 중성리비에도 교를 받는 사람이 명기되지 않았다고 본다. 그렇다면 教 다음에 나오는 ‘沙喙尔抽智奈麻喙部本智奈麻本牟子喙沙利夷斯利’까지가 白의 주어가 되며¹²⁾ 따라서 本牟子도 인명이 된다. 이들이 아뢰(白) 내용은 爭人이 누구나 하는 것이다. 쟁인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분쟁에 관여된 사람인데 4행의 喙評公斯弥에서 6행의 祭智壹伐까지가 해당된다.

2. ‘使人’과 ‘승’의 내용과 ‘今更還’

본 비문에는 6행과 10행에 사인이 나온다. 여기서의 먼저 6행의 사인의 성격과 그 활동에 대해 정리해 두기로 한다. 6행의 “使人奈蕪毒只道使喙念牟智沙喙鄒須智”에 대해 2명의 사인을 염모지와 추수지로 보는 견해,¹³⁾ 이 문장에 나오는 직책을 사인과 도사로 나누고 사인은 나소와 독지로, 도사는 염모지와 추수지로 파악한 견해,¹⁴⁾ 사인은 1명으로서 나소독지로 파악한 견

8) 선석열, 앞의 논문, p.42 ; 이우태, 앞의 논문 pp.80~81 ; 이문기, 앞의 논문, p.15 ; 강중훈, 앞의 논문, pp.147~148 ; 하일식, 앞의 논문, p.181 ; 이영호, 앞의 논문 p.232.

9) 선석열, 앞의 논문, p.42 ; 이문기, 앞의 논문, p.52 ; 이우태, 앞의 논문, p.81 ; 이영호, 앞의 논문, p.233.

10) 냉수리비의 “斯夫智王乃只王此二王教 用珎而麻村節居利爲證耳 令其得財教耳”와 “此七王等共論教 用前世二王教爲證耳 取財物盡令節居利得之教耳” 참조.

11) 봉평비의 “喙部牟即智寐錦王…沙喙部十斯智奈麻悉尔智奈麻等所教事” 참조.

12) 권인한, 앞의 논문, pp.65~66 ; 전덕재, 앞의 논문, pp.95~96쪽 ; 전덕재, 앞의 논문, pp.94~95.

13) 이문기, 앞의 논문, p.22 ; 전덕재, 앞의 논문, p.97.

해¹⁵⁾ 등도 있다.¹⁶⁾ 6행에 나오는 직책을 사인과 도사로 나누면 한 지역에 2명의 도사가 존재한 셈이 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금석문에서 한 지역에 2명의 도사가 파견된 사례는 없기 때문에 6행에 나오는 인물의 직책은 사인이었고 그 수는 도사의 직을 가진 한 명과 부명만 있는 1명해서 모두 2명이다.

사인은 본 비 외에 봉평비, 영천청제비명진명¹⁷⁾, 적성비 등에도 나온다. 이 사인은 중앙정부의 명령을 받아 수행하거나 중앙에서 파견된 군지휘관이나 행정관의 업무를 조력하는 존재로서 왕정인은 물론 지방인에게도 수여된 직명이었다. 그런데 본 비 6행에 나오는 탁부의 念牟智는 도사라는 지방관직을 맡은 자였다. 그는 사인으로서의 임무가 끝나면 본래의 업무인 도사 직책을 수행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본 비의 사인은 특별한 일이 생겼을 때 그 일을 처리하는 임무를 맡은 임시적 직책이었다고 할 수 있다.¹⁸⁾

중앙의 명령을 받고 온 이 사인이 분쟁을 구체적으로 처리하는 과정과 처리 내용을 보여주는 것이 6행 9번째 글자부터 10행 9번째 글자까지이다. 여기에서 핵심 단어는 舍과 昔云, 奪 그리고 今更還이다. ‘舍’의 주어는 앞에서 언급한 2명의 도사이다. 이들이 내린 영을 받는 대상에 대해 世舍과 昔云 사이에 나오는 사람들로 보는 견해¹⁹⁾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해석에는 영을 내

14) 선석열, 앞의 논문 p.43 ; 고광의, 앞의 논문, p.105 ; 이우태, 앞의 논문, p.81쪽 ; 이영호, 앞의 논문, p.236.

15) 권인한, 앞의 논문, p.55.

16) 사인을 앞의 문장과 연결시켜 보는 견해도 있다(강종훈, 앞의 논문, p.152).

17) 하일식, 앞의 논문, pp.186~187.

18) 使人 果西牟利와 典書 与牟豆 및 뒤에 언급할 豆智沙干支와 日夫智의 경우 부가 생략되어 있고 또 앞에 부명을 冠稱한 인물도 없다. 소속부가 분명하지 않으면서 관등을 가지거나 일정한 직책을 가진 이들의 성격 파악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 하겠다.

19) 선석열, 앞의 논문, p.43 ; 이우태, 앞의 논문, pp.82~83 ; 이문기, 앞의 논문, pp.19~22 ; 강종훈, 앞의 논문, pp.155~156 ; 이영호, 앞의 논문, pp.236~237. 이와

렸으면 그 영을 받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전제로 깔려 있다. 그러나 냉수리비의 ‘別敎’나 봉평비의 ‘別敎令’의 경우 敎나 令의 내용은 나오지만 영을 받아 시행하는 사람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관점에서 필자는 본 비에는 영을 받는 사람은 기록되지 않았으며 ‘令’의 구체적인 내용은 ‘令更還’으로 파악하는 바이다.

‘令更還(지금 다시 돌려 주라)’은 ‘奪’과 연결된다. 이 ‘奪’의 주어는 앞에 나오는 豆智沙干支宮과 日夫智宮이다.²⁰⁾ 이는 두지사간지궁과 일부지궁이 이전에 누구로부터 무엇을 빼앗은 것을 말해준다. 따라서 令의 내용은 ‘빼앗은 것을 지금 되돌려 주라[令更還]’는 것이므로 되돌려 주어야 할 사람은 두지사간지궁과 일부지궁이다. 반면에 되돌려 받는 사람은 뒤에 다시 언급하겠지만 牟且伐喙 作民沙 干支였다.

4. 證人과 ‘昔云’

앞에서 언급한 ‘令更還’은 판결에서 일종의 主文과 같은 성격의 것이다. 그런데 어떤 분쟁을 해결하려면 판결의 근거가 되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 증거를 토대로 판결하고 집행해야만 공정성이 담보되어 불만을 야기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보여주는 사례가 냉수리비이다. 냉수리비에는 두 번의 판결이 나온다. 하나는 사부지왕과 내지왕이 節居利를 증인으로 하여 판결을 내린 것이고²¹⁾ 다른 하나는 계미년(501년)에 지도로갈문왕 등 7명이 前世 二王의 교를 증거로 共論한 후 판결을 내린 것이다.²²⁾ 후자의 경우는 일종의 判例

는 달리 사인이 이해에 명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견해(전덕재, 앞의 논문, p.19)도 있다.

20) 이와는 달리 누군가가 두지사간지궁과 일부지궁을 빼앗았다고 보는 견해(전덕재, 앞의 논문, p.99)도 있다.

21) 냉수리비의 “斯羅喙斯夫智王乃智王 此二王敎用珍而麻村節居利爲證爾 令其得財 敎耳瓦” 참조.

22) 냉수리비의 “癸未年 九月廿五日 沙喙至都盧葛文王…斯彼暮斯智干支 此七王等共論

라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두 사례 모두 증인 또는 증거를 토대로 하여 판결이 이루어진 것을 보여준다.

본 비에서 판결을 내릴 때 증거와 관련된 것이 “昔云豆智沙干支宮日夫智宮奪尔”이다. 이 구절에서 9행 4번째 글자는 ‘昔’²³⁾, ‘普’²⁴⁾, ‘菘 또는 曹’²⁵⁾, ‘晔’²⁶⁾ 등으로 판독되고 있다. 필자는 이 글자의 字形이 ‘昔’자와 유사하다는 것과 그 아래에 나오는 ‘今’자와 對句를 이룬다는 것을 중시하여 ‘昔’자로 판독한다. 그렇다고 하면 ‘昔云’의 내용이 판결의 증거가 된다.

증거는 사람에게 의해 이루어지므로 7행의 卅卍 다음에 나오는 “于居伐壹斯利蕪豆古利村仇鄒列支干支比竹休壹金智奈音支村卜岳干支走斤壹金知珍伐壹”까지가 ‘昔云’의 주어로써 증인이 된다. 증인의 수는 이 문장을 간거벌(지명)의 일사리(인명), 소두고리촌(지명)의 구추열지(인명) 간지(관명)·비죽후(인명) 일금지(관명), 나음지촌(지명)의 복악(인명) 간지(관명)·주근(인명) 일금지(관명)로 끊어 읽으면 5명이 된다.

이들 5명이 말한 ‘昔云’의 핵심은 ‘이전에 豆智沙干支宮과 日夫智宮이 무엇을 빼앗았다’는 것이다. 사인은 이들의 증언을 토대로 두지사간지궁과 일부지궁으로 하여금 이전에 빼앗은 것을 ‘今更還’ 즉 ‘지금 돌려주라’고 명령을 내렸다. 되돌려 받는 사람은 뒤에 다시 언급하겠지만 牟且伐喙 作民沙 干支였다. 이는 중성리비도 냉수리비와 마찬가지로 증거 위주의 판결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데 ‘奪’, ‘昔云’, ‘今更還’은 시간성을 갖는다. 시간 순으로 말하면 卍

敎用前世二王敎爲證耳 取財物 盡令節居利得之敎耳” 참조.

23) 선석열, 앞의 논문, p.40 ; 권인한, 앞의 논문, p.60 ; 이우태, 앞의 논문, p.78 ; 강종훈, 앞의 논문, p.135 ; 하일식, 앞의 논문, p.179 ; 이영호, 앞의 논문, p.227.

24) 이문기, 앞의 논문, p.10.

25) 전덕재, 앞의 논문, p.93.

26) 고광의, 앞의 논문, p.101.

얗은 것이 먼저이고, 이러한 사실을 云謂한 것이 그 다음이며, 이렇게 云謂한 말을 듣고 사인이 영을 내린 것은 맨 나중이다. 따라서 ‘昔云’과 ‘今更還’ 사이에 시간적 간극이 있다. 이는 ‘昔云’의 증인들이 이전에도 이러한 증언을 하였고 본 비의 사인은 이들의 이전의 증언을 토대로 ‘今更還’의 영을 내린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관점에서 필자는 ‘昔云’의 증인들은 이전에 행해진 初審에서 증언을 하였고, 이번 판결은 이전의 증언을 토대로 하여 내려진 것이므로 2審과 같은 성격의 것으로 파악하는 바이다.

5. ‘牟旦伐喙作民沙干支’의 釋讀과 되돌려 받는 주체

증양에서 내려온 사인이 두지사간지궁과 일부지궁에게 빼앗은 것을 지금 되돌려 주라는 판결을 내리게 됨에 따라 자연히 빼앗긴 것을 되돌려 받는 사람이 누구이고 되돌려 받는 것이 무엇인가가 관심의 대상이 된다. 이에 해당되는 것이 10행의 “牟旦伐喙作民沙干支”이다. 이 문장에 대해서는 牟旦伐喙(부명), 作民(인명), 沙干支(관등명)로 읽는 견해,²⁷⁾ 모단벌과 탁부(부명), 작민(인명), 사간지(관명)으로 읽는 견해,²⁸⁾ 되돌려 받는 주체는 모단벌탁이고,²⁹⁾ 되돌려 받은 것은 ‘作民’ 즉 ‘민을 만들라’는 것으로 파악한 견해,³⁰⁾ 모단벌탁의 작민(농민)으로 보는 견해³¹⁾ 등이 있다.³²⁾ 그러나 10행의 모단벌탁은 4행에서 5행에 보이는 모단벌탁과 마찬가지로 部名이 분명하므로 모단벌탁을 ‘모단벌과 탁’으로 나눈다든가 모단벌을 앞의 문장과 연결시켜 보는 것은

27) 권인한, 앞의 논문, p.67.

28) 고광의, 앞의 논문, p.105.

29) 선석열, 앞의 논문, p.43 ; 이우태, 앞의 논문, p.83.

30) 이문기, 앞의 논문, pp.27~28.

31) 이영호, 앞의 논문, pp.238~239.

32) 모단벌을 앞의 문장에 연결시켜 되돌려 받는 주체로 보는 견해(강종훈, 앞의 논문, pp.157~158)도 있다.

성립될 수 없다.

본 비에는 물론 냉수리비와 봉평비에 이르기까지 탁부와 사탁부를 제외한 나머지 4부의 長이 지닌 관등은 모두 ‘干支’로 표기되고 있다. 이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탁부와 사탁부 중심의 정치 운영의 결과물인 것이다. 그런데 “牟旦伐喙作民沙干支”를 牟旦伐喙(부명)–作民(인명)–沙干支(관등명)로 읽고 사간지를 관등으로 보면 탁부와 사탁부 소속이 아닌 자가 沙干支라는 관등을 가진 셈이 된다. 이는 봉평비에 이르기까지 여타 部의 長들은 간지만을 가졌다는 것과 상치됨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필자는 이 문장을 牟旦伐喙(부명)–作民沙(인명)–干支로 끊어 읽고자 한다. 이렇게 읽으면 작민사는 바로 모단벌탁의 장의 이름이³³⁾ 되고 그의 관등은 간지가 된다. 이를 4행과 5행에 걸쳐 나오는 “牟旦伐喙斯利壹伐”과 연계하면 모단벌탁에도 간지–일벌의 지배조직이 있었음을 알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필자는 모단벌탁의 장인 작민사가 빼앗긴 것을 되돌려 받은 자라고 본다.³⁴⁾

그러나 여기에는 해명해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작민사가 당연히 爭人의 한 사람으로 나와야 되는데 쟁인 그룹에 그의 이름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지만 모단벌탁 출신인 斯利壹伐이 쟁인 중의 한 사람으로 나오고 있으므로 斯利가 部長인 작민사를 대신하여 분쟁에 관여하지 않았을까 추론해 둔다. 다른 하나는 빼앗고 되돌려 받은 것 즉 분쟁의 대상이 무엇이냐이다. 이에 대해서는 民으로 본 견해³⁵⁾,

33) 作民沙를 인명으로 보면 沙자가 인명 末字로 사용된 예가 없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는 금석문의 인명 자료만 가지고 沙가 인명 말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도리어 이 경우는 인명 말자의 새로운 용례를 보여주는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본 비의 ‘本波喙柴干支’에서 인명을 柴로 보든 喙로 보든 柴가 인명으로 사용된 것과 궤도를 같이 한다.

34) 하일식, 앞의 논문, pp.184~185.

35) 이문기, 앞의 논문, pp.35~36 ; 전덕재, 앞의 논문, p.100.

珞壹伐이라는 私領地로 본 견해³⁶⁾, 수익권과 연관된 일정한 촌락일 것으로 본 견해,³⁷⁾ 금광으로 본 견해,³⁸⁾ 진벌 지역의 토지로 본 견해³⁹⁾ 등 다양한 견해가 제기되었다. 그러나 필자처럼 본 비문을 해석하면 이 판결문에는 분쟁의 대상이 기록되지 않은 셈이 된다. 왜 분쟁의 대상이 기록되지 않았는지도 두지사간지공과 일부지공이 이것을 왜 빼앗았는지에 대한 설명은 앞으로의 과제로 둘 수밖에 없다.

본 비의 내용이 분쟁의 처리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때 주목되는 것이 빼앗은 주체와 빼앗겼다가 되찾은 주체의 소속 부가 다르다는 점이다. 되찾은 자의 소속부는 모단벌탁이었다. 빼앗은 자인 두지사간지공과 일부지공의 경우 어느 부 소속인지 알 수 없다. 그러나 사간지라는 관등은 탁부와 사탁부 출신자만이 지닐 수 있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은 탁부나 사탁부 출신자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본 비의 분쟁은 부를 달리하는자들 사이에서 벌어진 것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에서는 사인을 파견하여 증거에 입각해 두지사간지공과 일부지공에게 빼앗은 것을 모단벌탁 작민사간지에게 되돌려 주라는 판결을 내렸던 것이다. 이는 부와 부 사이에 벌어진 분쟁은 왕권에 의해 조정되고 해결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6. 판결의 뒤처리와 ‘与重罪’

어떤 재판에서든지 진 쪽에서는 불만이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판결을 내린 이후에는 이러한 불만이 생겨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를 보여주는 것이 10행에서 11행에 걸쳐 나오는 ‘使人果西牟利白口 若後世更澹人者与重罪’이다. 여기서 동사는 ‘白口’와 ‘与’이고 주어는 사인인 과서모리이다.

36) 강중훈, 앞의 논문, pp.159~160.

37) 하일식, 앞의 논문, pp.195~196.

38) 이우태, 앞의 논문, pp.84~85.

39) 이영호, 앞의 논문, pp.137~138.

이에 대해 연구자들 사이에 아무런 이론이 없다.

이 문장에서 문제가 된 것은 使人인 果西牟利가 누구에게 아뢰었느냐 하는 것이었다. 이 문제에 대해 앞에 나오는 沙干支의 사인으로 보는 견해도 있고,⁴⁰⁾ ‘喙作民 沙干支’의 사인으로 보는 견해⁴¹⁾도 있다. 전자의 경우 사간 지라는 관등만 있고 이름과 부명이 없기 때문에 그 실체가 모호하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 사간지를 豆智沙干支로 비정하기도 하지만⁴²⁾ ‘豆智沙干支’와 ‘使人果西牟利’ 사이에 여러 명의 인물들이 있으므로 문장 구조 상 성립할 수 없다. 후자의 경우 작민 사간지의 역할이 불분명하다는 단점이 있다. 필자는 사인이 아뢰는 것[白口]은 重罪를 준다는 것으로 본다.⁴³⁾ 중죄를 주겠다는 것은 공적인 사법적 행위이다. 여기에는 관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10행의 사인도 6행의 사인과 마찬가지로 중앙정부의 명령을 받은 공적 직책이다. 그렇다고 하면 이 사인이 ‘만약 이후 다시 시비를 말하는 자에게는 중죄를 주겠다’고 아뢰는 것[白口]은 사적인 인물에게 한 것이 아니라 공적으로 중앙에 보고한 것이 된다. 이러한 행위는 냉수리비에 典事人 7명이 일을 처리한 후 중앙정부에 보고한 것을 ‘白’으로 표기한 것과⁴⁴⁾ 같다.

판결에 불만을 토로할 경우 중죄를 주겠다고 하는 것은 냉수리비의 ‘若更 澹者 教其重罪耳’에서도 확인된다. 냉수리비에서 이렇게 중죄를 주겠다고 공언을 한 것은 此七王等이 共論하여 판결을 내렸을 때의 일이다. 그런데 이 분쟁과 관련한 이때의 판결은 첫 판결이 아니라 사부지왕과 내지왕의 판결에 이은 두 번째의 판결이다. 따라서 판결에 이의를 달지 못하도록 한 것은

40) 이문기, 앞의 논문, pp.30~31.

41) 강중훈, 앞의 논문, p.160.

42) 이문기, 앞의 논문, p.31 ; 전덕재, 앞의 논문, p.101 ; 이영호, 앞의 논문, pp.241~242.

43) 이러한 의미로 사인의 성격을 파악한 것으로는 하일식, 앞의 논문, pp.185~186.

44) 냉수리비의 “典事人 沙喙壹夫智奈麻…喙沙夫那斯利沙喙蘇那支 此七人跪長所白了事” 참조.

재심 때의 일이 된다. 이러한 방식은 중성리비에서도 확인된다. 필자는 앞에서 ‘昔云’을 근거로 하여 중성리비의 이번 판결은 초심이 아니라 재심이라고 보았다. 이 재심 때에 사인 과서모리는 후일 시비를 말하는 자에게 중죄를 준다는 사실을 공고하였다. 이는 냉수리비와 같은 방식이다. 이처럼 재심을 한 후 내린 판결에 대해 이의를 달지 못하도록 한 것은 신라에서의 분쟁 재판이 2심제였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해 준다고 하겠다.

IV. 六部體制의 운영과 지방 지배

1. 탁부-사탁부 중심의 운영

1) 탁부-사탁부 중심의 운영 시기와 배경

중성리비에는 탁(탁부), 사탁, 모단벌탁, 본파탁 등 육부의 명칭이 나온다. 喙部의 경우 喙 또는 喙部로 표기하고 있어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고⁴⁵⁾ 牟 且伐喙은 본 비에 처음 나오는 표기이다. 喙은 ‘부리’의 의미도 가져 ‘별판’을 나타내기도 하며⁴⁶⁾ ‘돌’, ‘양’, ‘들’ 등으로도 읽혀 ‘제방’을 뜻하기도 한다. 어느 것이든 농경과 관련되는 것이다. 육부의 명칭에 ‘喙’자가 공통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이들의 성립기반이 비슷하였음을 보여준다. 즉 일정한 별판을 배타적으로 가지면서 성장한 세력들이 육부를 구성하였던 것이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六部는 유리왕 9년(서기 32)에 성립된 것으로 나오고⁴⁷⁾, 婆娑이사금 23년(102)조에는 部主 아래에 伊滄-位卑者로 이루어진

45) 6부명의 표기는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는 관점에서 탁을 부명으로 보지 않고 뒤의 문장에 나오는 인명과 연결시켜 보는 견해(강종훈, 앞의 논문, pp.145~146쪽)도 있다.

46) 전덕재, 앞의 논문, p.107.

47) 『삼국사기』 권1, 신라본기 유리이사금 9년조의 “春 改六部之名 仍賜姓…” 참조.

지배조직이 있었음을 보여준다.⁴⁸⁾ 그러나 이 기사들을 이용하고자 할 때 이 기사가 어느 시기의 상황을 반영하느냐를 먼저 정리해 두어야 한다. 이 문제는 『삼국사기』, 신라본기 초기기록의 신빙성 문제와 직결된다. 필자는 한국 고대사회에서 국가발전단계는 邑落 단계-國단계-國聯盟단계-部體制 단계-中央集權的國家體制단계로 보고 이 가운데 부체제 단계는 연맹 단계에서 중앙집권국가 단계로 넘어가는 과도기로 파악한다.⁴⁹⁾ 이를 신라사에 적용하면 6촌장 시기는 邑落단계에, 거서간-차차웅 시기는 國단계에, 이사금 시기는 國聯盟단계에, 마립간 시기는 바로 部體制단계에 해당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필자는 파사이사금 23년조의 기사는 마립간 시기의 상황이 이 시기에 遡及·附會된 것으로 보는 바이다.

마립간 시기에 신라 육부가 만들어졌음을 보여주는 것이 나물왕 26년(381)에 前秦에 파견된 사신 衛頭와 전진왕 苻堅 사이에 오간 대화이다.⁵⁰⁾ 부견이 신라와 관련한 내용이 자신이 전에 알고 있던 것과 다르다는 것을 지적하자 위두는 중국에서도 시대가 바뀌고 그에 따라 명호에도 변화가 있었듯이 신라에도 그러한 변혁과 改易이 있었다고 대답하였다. 위두가 말한 ‘名號改易’의 대표적인 사례는 최고지배자의 칭호가 이사금에서 마립간으로 바뀐 것을 들 수 있다. 『삼국유사』에는 그 시기를 나물왕대로 보고 있다. 한편 『삼국사기』에 의하면 유레이사금 14년(297)에 伊西古國의 침략을 물리친 이후⁵¹⁾ 진한연맹체를 구성하였던 국들에 대한 정복 기사가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 이는 진한을 구성한 국들이 4세기에 들어와 모두 사로국에 병합된

48) 『삼국사기』 권1, 신라본기 파사이사금 23년조의 “秋八月…於是王命六部 會饗首露王 五部皆以伊滄爲主 唯漢祗部以位卑者主之…” 참조.

49) 노중국, 1988 『백제정치사연구』, 일조각, p.26.

50) 『삼국사기』 권3, 신라본기 나물왕 26년조의 “遣衛頭入苻秦 貢方物 苻堅問衛頭曰 卿言海東之事 與古不同 何耶 答曰 亦有中國時代變革 名號改易 今焉得同” 참조.

51) 『삼국사기』 권2, 신라본기 유레이사금 14년조.

것을 말해 준다. 이것을 시대변혁이라 할 수 있다. 육부체제는 바로 이러한 시대변혁과 명호개역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 결과 왕권의 위상은 연맹체단계(이사금시기)보다 훨씬 높아졌다. 마립간의 麻立이 位次를 나타내는 概標로서 왕권은 위에 놓이고 그 아래에 臣概이 놓였다고 한 것은⁵²⁾ 격상된 왕의 위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마립간 시기의 육부 운영과 관련하여 중성리비와 냉수리비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각 비문에 보이는 인물들의 대다수는 탁부와 사탁부 출신이라는 것과 이들이 교를 내리는 등 중요한 일을 결정하고 처리하는 역할을 하였다는 사실이다. 중성리비의 경우 교를 내리는 주체도 탁부와 사탁부 출신자이며, 일을 처리하는 임무를 맡은 사인의 역할도 탁부와 사탁부 출신자가 맡았다. 냉수리비의 경우도 ‘共論’하여 교를 내린 7명의 인물 가운데 5명이 탁부와 사탁부 출신이며, 또 일을 처리하는 임무를 맡은 典事人 7명도 모두 탁부와 사탁부 출신자였다. 이는 이 시기에 정치운영이 탁부-사탁부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을 보여준다.

둘째, 탁부와 사탁부 출신자들만이 후일 경위로 정비된 관등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중성리비의 경우 탁부와 사탁부 출신자들이 아간지, 사간지, 나마를 가진 것으로, 냉수리비의 경우에는 아간지, 거벌간지, 일간지, 나마를 지닌 것으로 나온다. 이는 나머지 4부의 長이 干支를 지닌 것과 분명히 다른 것으로서 탁부와 사탁부 출신자들이 차별화된 優待를 받았음을 보여준다. 이를 방증해 주는 것이 3세기경 고구려의 5부체제 운영이다. 고구려에서 5부 가운데 古雛加를 칭할 수 있는 자들은 왕족 계루부 출신의 大加와 전왕족인 소노부의 適統大人 및 왕실과 世婚하는 절노부의 積統대인 뿐이었다.⁵³⁾

52) 『삼국사기』 권3, 신라본기 눌지마립간 즉위년조의 “金大問云 麻立者方言 概野 概謂 誠操 准位而置 則王概爲主 臣概列於下 因以名之” 참조.

53) 『삼국지』 권30, 위서 동이전 고구려전의 “王之宗族 其大加皆稱古雛家 消奴部本國主

이는 고구려의 5부체제가 계루부와 소노부 및 절노부를 중심축으로 운영되었음을 보여준다. 마립간 시기의 탁부, 사탁부 중심의 정치운영도 바로 고구려의 5부체제 운영과 궤도를 같이 하는 것이다.

그러나 탁부와 사탁부 중심의 육부 운영은 육부가 성립될 당초부터 그러한 것은 아니었다. 이는 마립간 시기 초기의 정치적 상황에서 추정해 볼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나물왕은 381년에 이찬 大西智의 아들 實聖을 고구려에 인질로 보내야 하였고, 400년에는 광개토태왕비문에서 보듯이 백제-가야-왜의 압력을 막기 위해 고구려의 도움을 받았다. 그로 말미암아 신라 영토 내에 고구려 군대가 주둔하게 되었다.⁵⁴⁾ 또 나물왕이 죽은 후 늘지를 비롯하여 그의 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昔氏系와 연결되는 실성왕이 왕위에 올랐다. 여기에는 고구려군의 간섭이라는 외적 요인 이외에 나물왕계를 견제하려는 세력들의 정치적 움직임도 작용하였다. 이를 짐작하게 하는 것이 마립간이라는 칭호의 최초 사용 시기이다. 『삼국유사』에는 마립간은 나물왕대에 처음 사용된 것으로 나오지만 『삼국사기』에는 늘지왕대로 나온다. 이 사이에 실성왕이 존재한다. 이를 종합하면 마립간은 나물왕대에 최초로 사용되었지만 실성왕대에 와서 다시 원상으로 돌아갔다가 늘지왕대에 와서 마립간의 사용이 재확립된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⁵⁵⁾ 이렇게 보면 실성왕대에는 나물왕대에 추진하였던 왕권강화 정책에 일정하게 제동이 걸렸고, 또 실성왕이 고구려 군사에게 늘지를 제거해 줄 것을 요청한 것에서 보듯이 고구려에 대한 隸屬의 정도도 강해졌다.

이러한 상황을 일정하게 극복한 왕이 늘지왕이다. 늘지왕은 고구려 군사

今雖不爲王 適統大人 得稱古雛加 亦得立宗廟祠靈星社稷 絕奴部世與王婚 加古雛之號” 참조.

54) 『일본서기』 권14, 옹랴기 8년조의 “而大懼中國之心 脩好於高麗 由是高麗王遣精兵一百人 守新羅…” 및 「중원고구려비」의 “新羅土內幢主” 참조.

55) 김철준, 1975 『한국고대사학회연구』, 지식산업사, p.144.

를 이용해 자신을 죽이려던 실성왕을 도리어 제거하고 왕위에 올랐다. 즉위 후 눌지왕은 고구려에 인질로 가 있던 卜好와 왜에 인질로 가 있던 未斯欣을 歸還시켜 인질에 대한 부담을 덜었다. 또 17년(433)에는 백제와 우호관계를 수립하면서 共守동맹을 맺었고, 34년(450)에는 실직원에서 사냥하는 고구려 장수를 죽이기도 하였다. 이처럼 눌지왕은 대외적으로 독자성을 추구하면서 대내적으로는 왕권 강화를 시도하였다. 그런데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왕권을 뒷받침하는 세력 기반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성에서 눌지왕은 일차적으로 탁부와 사탁부를 중심으로 정치운영을 도모하면서 나머지 4부의 정치적 영향력을 축소하거나 약화시켜 나간 것이다. 이를 통해 왕권은 보다 안정되게 되었다. 『삼국사기』에 마립간 칭호가 눌지왕대에 처음 사용된 것으로 나오는 것도 이러한 맥락과 궤도를 같이 하는 것이다.

2) 관등의 增設과 확대

중성리비에는 탁부와 사탁부 출신자들은 아간지, 사간지, 나마 등의 관등을 받은 것으로 나온다. 또 모단벌탁과 본파탁의 수장인 간지 아래에 壹仗이 보인다. 이 관등들은 본 비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설치되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본 비에 나오는 관등은 당시 신라 관등의 전체가 아니다. 실제로는 이 보다 더 많은 관등이 설치되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면 이 중성리비가 만들어진 441년을 전후한 시기의 관등의 실제 모습은 어땠을까. 관등제의 성립 과정은 국가발전 단계와 궤도를 같이 한다. 신라의 경우 國단계에서의 수장의 칭호는 거서간에서 보듯이 干支였고, 國聯盟단계에서 수장의 칭호는 尼師今이었다. 이러한 수장 아래에 두어진 官名이 『삼국사기』, 외위조에 나오는 ‘一仗—一尺—彼日—阿尺’이다. 그러나 육부체제가 갖추어지면서 왕권이 보다 강화되고, 지배영역도 크게 늘어나자 종래 국의 수장으로서 지냈던 官制만으로는 정치운영이 어렵게 되었다. 이

에 따라 마립간은 관제를 새로이 정비하여야 하였다.

그 정비의 모습을 추론하는데 단서가 되는 것이 두 가지이다. 하나는 경위 17관등 가운데 아간지-대아간지, 나마-대나마, 사지(소사제지)-대사제지, 오지(소오제지)-대오제지에서 보듯이 특정 관등이 大小로 분화되었다는 점이다. 대소는 하나가 기준이 된 후 다른 하나가 만들어져 구분된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아간지, 나마, 사지, 오지가 먼저 만들어졌고, 여기에서 분화·격상된 대아간지, 대나마, 대사제지, 대오제지는 이보다 뒤에 만들어진 것이라 하겠다. 다른 하나는 비록 고구려의 경우이지만 부체제 단계에 와서는 종래의 사자-조의-선인 위에 상가, 대로, 패자, 주부, 승, 우태 등의 관등을 두었다는 사실이다. 이를 원용하면 신라도 마립간 시기에 들어오면서 강화된 왕권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존에 있던 일벌-일척-피일-아척이라는 관제 위에 아간지, 나마, 사지, 오지 등의 官等を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가운데 아간지가 최고의 관등이었다.⁵⁶⁾

나물왕대에 성립된 육부체제는 눌지왕대에 와서 큰 변화를 겪었다. 그래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탁부와 사탁부 중심으로 운영되어 갔다. 이처럼 탁부, 사탁부 중심의 정치운영이 이루어지는 동안 부의 내부 분화도 진행되

56) 아간지의 성격을 파악하는데 단서가 되는 것이 두 가지이다. 하나는 『송서』 권96, 열전56 鮮卑土谷渾전의 “阿柴虜吐谷渾 遼東鮮卑也 父突洛韓 有二子 長曰吐谷渾 小曰若洛鹿 若洛鹿別爲慕容氏 渾庶長 鹿正嫡 父在時 分七百戶與渾 渾與鹿二部俱牧馬 馬鬪相傷 鹿怒 遣信謂渾曰 先公處分 與兄異部 牧馬何不相遠 而致鬪爭相傷 渾曰…今唐去汝萬里 於是擁馬西行 日移一頓 頓八十里…後鹿追思渾 作阿干之歌 鮮卑呼兒爲阿干 鹿子孫竊號 以此歌爲輦後大曲”에서 보듯이 土谷渾에서는 阿干은 兒을 가리키는 말이라는 사실이다. 다른 하나는 통구스족에서는 伯祖父·伯父·兄이 모두 같은 호칭이었고, 백부와 조부의 호칭, 숙부와 형의 호칭이 같았는데 호칭이 같다는 것은 가족 안에서의 지위가 같다고 한 사실이다(김철준, 1975 앞의 책, p.235). 이러한 사실들을 고려할 때 마립간 시기의 阿干은 兒과 같은 위상을 갖는 존재가 아니었을까 한다. 이에 대해서는 후일 별도로 검토해 보기로 한다.

었다. 부의 내부 분화는 정치에 참여하는 자의 수의 증가를 가져왔고 그에 따라 이들 사이의 서열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 문제는 새로운 관등의 설치로 해결되었다. 중성리비와 냉수리비를 종합해 보면 아간지와 나마 사이에 사간지, 일간지, 급별간지가 위치하고 있다. 이는 이 관등들이 아간지와 나마보다 늦게 설치된 것을 보여준다. 그 시기는 늦어도 눌지왕대이다. 이렇게 보면 눌지왕은 즉위 이후 탁부와 사탁부 중심으로 정치를 운영해 나가는 과정에서 탁부, 사탁부 출신자들 사이의 상하 서열을 규정하기 위해 사간지, 일길간지, 급별간지라고 하는 새로운 관등을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봉평비를 보면 대아간지, 태나마, 소사제지, 소오제지 등 분화된 관등들이 나오고 있다. 대아간지는 아간지에서 분화·격상된 것이고, 태나마는 나마에서 분화·격상된 것이다. 그리고 소사제지와 소오제지는 대사제지와 대오제지의 존재를 짐작하게 한다. 아간지에서 대아간지가 분화·격상된 시기는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법흥왕 8년(521)의 상황을 반영해 주는 『양서』, 신라전에 대아간지보다 위계가 높은 子賁旱支(이벌찬)와 齊旱支(잡찬)가⁵⁷⁾ 보이고 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아간지에서 대아간지의 분화·격상은 냉수비리 이후 521년 이전의 어느 시기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나마에서 태나마가, 사지에서 대사제지가, 소오에서 대오제지가 분화·격상된 시기도 이 무렵으로 볼 수 있겠다.

57) 『양서』 권54, 열전48 신라전의 “普通二年 王募名秦始遣使…其官名有子賁旱支齊旱支 支調旱支壹告支奇貝旱支” 참조.

2. ‘部 干支’의 분화와 ‘五千支’, ‘壹伐’

1) 部 干支의 분화와 ‘五千支’

육부의 운영과 관련하여 중성리비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이 주목된다. 첫째는 탁부와 사탁부를 제외한 4부에는 “本波喙柴干支弗乃壹伐金評△干支祭智壹伐”에 본파탁-柴-간지와 金評△-간지가⁵⁸⁾ 나오는 것에서 보듯이 干支를 가진 인물이 복수로 존재하였다는 사실이다. 이를 통해 간지를 가진 복수의 인물은 본파탁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부에도 있었다는 것과 또 간지의 수도 두 명이나 그 이상이었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부의 간지가 여러 명으로 나오게 된 것은 각 부의 내부 분화와 관련된다. 분화가 진행될수록 부 내부에서의 유력자의 숫자는 늘어나기 마련이며, 그에 따라 유력자 상호 간에 서열 문제와 승진 문제 등이 일어난다. 탁부와 사탁부의 경우 이 문제는 일길간지, 사간지, 거별간지와 같은 새로운 관등을 添設함으로써 해결되었다. 그러나 나머지 4부의 유력자들의 서열화 문제는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여야 하였다. 그 해결책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봉평비에 보이는 ‘五千支’이다.

종래에는 봉평비 제1행 마지막 글자는 없거나 모르는 것으로 하였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本波部△夫智干支’로 판독한 후 본파부(부명)-△夫智(인명)-干支’로 분석하였다. 그런데 최근에 울진군의 심현용 학예사가 모르는 이 글자가 ‘五’자라는 것을 새로 판독하였다.⁵⁹⁾ 이 소식을 듣고 필자

58) 이영호, 앞의 논문, p.235. 이와는 달리 ‘金評 △干支’로(강종훈, 앞의 논문, pp.154~155) 또는 △를 ‘沙’로 추독하고 ‘金評 沙干支’로(이우태, 앞의 논문, p.82; 하일식, 앞의 논문, p.183) 끊어 읽는 견해도 있다.

59) 심현용, 2009, 「고고자료로 본 5~6세기 신라의 강릉지역 지배방식」 『문화재』 제42권·제3호, 국립문화재연구소, 21쪽 주)36 참조. 이를 판독해내고 알려준 심현용 울진군학예사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

는 봉평신라비전시관에서 가서 이를 확인하고 또 탁본과도 대조해 보니 오자가 틀림없었다. 이 부분은 본과부(부명)-△夫智(인명)-五干支(관명)으로 수정할 수 있게 되었다.

‘五干支’는 문장 구조에서 볼 때 5명의 간지라는 의미가 아니다. 그 자체가 官等名이다. 또 명칭에 干支를 공유하고 있으므로 干支계열의 관등명이라 할 수 있다. 오간지라는 관등명이 나오게 된 배경을 밝히는데 단서가 되는 것이 신라 17관등제에서 시행된 重位制이다. 중위제는 아찬이 중아찬에서 4중아찬까지, 대나마가 중대나마에서 9중대나마까지, 나마가 중나마에서 7중나마까지 분화·격상된 것을 말한다.⁶⁰⁾ 신라가 중위제를 실시하게 된 배경은 골품제의 폐쇄성과 연관이 있다. 즉 육두품 출신자가 받을 수 있는 관등은 아간지(아찬)가 최고인데 이 아간지를 지닌 자의 수가 증가하면서 상급 관등으로 승진하지 못하는 상황이 빚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관등 승진의 한계성을 해결하기 위해 아찬을 重아찬-3重아찬-4重아찬으로 분화·격상시켰고, 같은 방식으로 五頭品이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관등인 대나마를 重대나마에서 9重대나마까지로 분화·격상시켰던 것이다.⁶¹⁾

이렇게 보면 五干支도 干支에서 분화·격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마립간 시기에 와서 4部の 내부 분화가 진전되면서 4부 안에서 일정한 지위를 가진 자들의 수가 늘어났고 그에 따라 승진에 정체가 생겨나게 되었다. 마립간은 이들 사이의 정치적 서열을 어떤 형태로든 결정해 주어야 하였고 또 승진의 정제도 풀어주어야 하였다. 그 방법으로 나온 것이 간지를 분화·격상시켜 重干支, 3干支 등을 만들고 이를 확대·재생산시켰던 것이다. 그 결과 봉평비에 五干支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보면 마립간 시기의 干支

60) 신라 중위제에 대한 연구사 정리는 서의식, 1994 『신라상대 ‘干’층의 형성 분화와 중위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참조.

61) 변태섭, 1956 「신라관등의 성격」 『역사교육』 1집, 역사교육학회, pp.62~75.

의 분화는 신라 중위제의 기원이 된다고 하겠다.

2) 部의 지배구조와 ‘壹伐’

중성리비에서 부의 지배구조 및 운영과 관련하여 또 하나 주목되는 것은 IV에서 VI행에 걸쳐 있는 “牟旦伐喙斯利壹伐皮朱智本波喙柴干支弗乃壹伐金評△干支祭智壹伐”에서 보듯이 본파탁과 모단벌탁에 나오는 ‘壹伐’이다. 중성리비의 일벌은 六部人이 지니고 있어 봉평비와는 분명히 다르다. 봉평비의 일벌은 지방민이 소지한 外位이다. 연구자들 가운데는 중성리비의 일벌을 외위라 부르기도 한다.⁶²⁾ 그러나 외위는 개념상 지방민을 대상으로 한 관등이므로 왕경의 部人이 받은 일벌을 외위로 부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필자는 육부의 일벌을 잠정적으로 ‘部官’으로 부르기로 한다.

중성리비에는 柴干支-弗乃壹伐, 金評△干支-祭智壹伐에서 보듯이 간지-일벌이 하나의 셋트로 나온다. 모단벌탁의 경우에도 후술하는 바와 같이 간지-일벌이 셋트로 나온다. 따라서 일벌은 간지 아래에 두어진 官임을 알 수 있다. 이 일벌의 성격을 이해하는데 단서가 되는 것이 『삼국지』, 고구려전에 나오는 “諸大加亦自置使者皂衣先人 名皆達於王 如卿大夫之家臣 會同坐起 不得與王家使者皂衣先人同列”⁶³⁾이라 한 기사이다. 이 기사의 諸大加는 왕족이 속한 계루부를 비롯하여 5부의 長과 부 안의 유력자였다. 이들은 왕과 마찬가지로 사자, 조의, 선인을 스스로 둘 수 있었다. 따라서 이들을 部官이라 할 수 있겠다. 왕과 대가가 동일한 官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부체제 성립 이전에 계루부의 전신이 되는 國의 수장과 이들과 연맹을 형성한 國의 수장들이 수평적인 관계에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5부체제가 성립되고 왕권이 강화되면서 왕은 종래의 지배조직 위

62) 이문기, 앞의 논문, p.45 ; 전덕재, 앞의 논문, p.109.

63) 『삼국지』 권30, 위서동이전 고구려전.

에 상가, 대로, 패자, 고추가, 주부, 우태, 승 등과 같은 상위의 관등을 두어 지배권을 강화하였다. 반면에 각 부의 여러 대가들은 종래의 지배조직을 그대로 유지해 나가고 있었지만 그 위상은 이전보다 낮아졌다. 그 결과 여러 대가들은 자신이 설치한 지배조직의 명단을 왕에게 보고하여야 하였고 공식적인 모임에서 대가들의 사자, 조의, 선인은 왕 휘하의 사자, 조의, 선인과 쉼을 같이 할 수 없게 되었다.

이를 원용하면 신라도 이사금 시기에는 왕과 각국의 수장의 지배조직은 비슷하였지만 마립간 시기에 와서 크게 변화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 변화의 핵심은 왕권 하에 더 많은 관등을 두고 이 관등을 지닌 자들을 중심으로 정치를 운영하는 것이었다. 이때 설치된 마립간 휘하의 관등이 앞에서 언급한 야간지, 사간지, 일길간지, 나마, 사지, 오지 등의 상위 관등이었다. 이 관등은 탁부와 사탁부 출신자에게만 수여되는 배타적 성격의 것이었다. 반면에 부의 유력자들은 이사금 시기의 지배조직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중성리비에 본파탁과 모단별탁의 간지 아래에 두어진 일벌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중성리비에 壹伐만 보인다고 하여 이때의 部官은 일벌뿐이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다. 일벌 이외에도 다른 부관들도 있었을 것이다. 이를 추정하는데 단서가 되는 것이 외위 조직 가운데 干(下干支) 아래에 나오는 一伐—一尺—彼日—阿尺이다. 간(간지)은 이사금 시기에는 國의 수장의 칭호였고 부체제 하에서는 部의 長을 가리킨다. 이 간지 아래에 두어진 일벌은 중성리비에 나오는 일벌과 동일하다. 그렇게 보면 4부의 간지와 탁부, 사탁부의 유력자들 휘하에는 일벌 이외에 일척, 피일, 아척도 두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⁶⁴⁾

이를 방증해 주는 것이 『삼국사기』, 파사왕 23년조에 나오는 기사에 部

64) 전덕재, 앞의 논문, p.109.

主 아래에 伊滄과 位卑者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다. 이 기사의 部主는 부의 干支를 말한다. 그리고 이찬과 위비자는 간지 아래에 두어진 部官조직이다. 이찬은 伊尺滄이라고도 하였는데 창녕비에는 一尺干으로도 표기되고 있다. 일척간은 외위 중의 하나인 ‘一尺’에 ‘干’이 첨가되어 만들어진 것이다. 이로 미루어 볼 때 파사왕 23년조에 나오는 부주 아래의 이찬(일척간)은 본래는 ‘一尺’이었고 位卑者는 일척 다음에 나오는 피일이나 아척이었을 것이다.⁶⁵⁾ 그렇다고 하면 部長(部干支)-일척-피일-아척의 모습은 바로 중성리비의 부의 내부 구조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⁶⁶⁾

3. 지방지배와 ‘道使’, ‘村 干支-壹金知’

1) 왕실 直轄地와 도사의 파견

중성리비에는 奈蕪毒只 도사가 나온다. 이는 신라의 도사 자료 가운데 가장 빠른 사례이다. 이후 냉수리비에는 耽須道使가, 봉평비에는 居伐牟羅道使와 悉支道使가 나오고 있다. 도사는 지방에 파견된 지방관이다. 따라서 도사의 존재는 마립간 시기에 지방통치가 이루어진 것을 보여준다.

이 시기에 이루어진 지방통치의 방식을 추론하고자 할 때 단서가 되는 것이 『삼국지』, 부여전의 “諸加別主四出道 大者主數千家 小者數百家”⁶⁷⁾이라

65) 『삼국사기』, 신라본기 초기기록에 보이는 이별찬, 이찬 등의 경위는 본래 일별, 일척 등이었지만 17관등제가 확립된 후 편찬된 역사서에서 일별은 일별간으로, 일척은 일척간으로, 피일은 파진간으로, 아척은 아척간으로 정리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별고에서 다루고자 한다.

66) 필자는 이전의 논문에서 部主(部干支) 휘하에 두어진 관제는 아찬-나마-사지라고 파악한 바가 있는데(노중국, 1997 「신라 17관등제의 성립과정」 『계명사학』 8집, pp.22~23쪽) 여기서 수정해 둔다.

67) 『삼국지』 권30, 위서동이전 부여전.

한 기사이다. 이 기사에 의하면 3세기 당시 부여에서는 諸加들이 별도로 四出道를 주관하였다고 한다. 諸加는 부의 長이나 部内の 유력자들을 말한다. 이들은 세력의 크기에 따라 대가 소가로 불렸다. 제가들이 주장한 사출도 지역은 부여의 전 영역은 아니다. 당연히 왕의 直轄地는 별도로 있었고 또 그 범위는 제가들이 주관하는 지역보다 훨씬 컸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3세기 당시 부여의 영역은 크게 왕의 직할지와 諸加들이 별도로 주관하는 지역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부체제 단계에서 부여의 지방 지배는 국왕에 의한 직접 지배와 부의 유력자들인 大·小加들을 통한 간접 지배라고 하는 이원적 형태로⁶⁸⁾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원용하면 마립간 시기 신라의 영역도 왕의 직할지와 탁부, 사탁부의 장 및 부의 干支들이 주관하는 지역으로 나누어졌을 것이다. 왕의 직할지는 넓었기 때문에 이를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 지방관을 파견하였다. 이때 파견된 지방관이 바로 道使였다.⁶⁹⁾ 이렇게 보면 지방관 파견은 왕의 직할지부터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도사가 파견된 본 비의 나소독지 지역이나, 냉수리비의 탐수 지역은 왕의 직할지라 할 수 있다. 도사는 본 비에 이미 보이고 있으므로 도사의 최초 파견은 본 비가 세워진 441년보다 앞선 것으로 보아야 한다.

도사가 파견된 곳은 거점 지역이다. 그러나 도사는 거점 지역만을 지배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다. 이를 추론하는데 단서가 되는 것이 봉평비이다.

-
- 68) 『삼국지』 고구려전에 고국천왕이 죽은 후 拔奇와 伊夷模가 왕위계승전을 벌였고, 이 싸움에서 패한 발기는 消奴加가와 더불어 요동의 공손강에게 항복한 후 소노가는 비류수로 되돌아왔다. 비류수 지역은 비류국 松讓王과 연결되는 소노가의 기반이 있었던 곳이었다. 소노가가 이곳으로 遷住하였다는 것은 이곳을 소노가가 統主하였음을 의미한다. 이는 부여의 사출도를 제가들이 統主한 것과 궤도를 같이 한다고 하겠다.
- 69) 중성리비와 냉수리비에 나오는 도사에는 관등이 표기되어 있지 않다. 두 비에 지방관의 관등이 표기되지 않은 이유는 앞으로 검토해야 할 과제라 하겠다.

봉평비에는 거벌모라, 아대혜촌, 갈시조촌, 남미지촌 등이 나오는데 이 가운데 거벌모라에만 도사가 보이고 또 그 출신자들만 외위를 가지고 있다. 반면에 나머지 촌에는 使人들만 나온다. 이는 도사가 거벌모라를 거점으로 하여 주변의 촌들도 지배하였음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나소독지나 탐수 지역 주변의 촌들도 모두 도사가 관할하였다고 하겠다.

중성리비에서 도사가 파견된 나소독지의 위치는 의창군의 領縣인 鬢立縣에 비정할 수 있다. 기림현의 본래의 명칭은 只沓縣이었다. 지담현의 ‘只沓’은 奈蘇毒只의 ‘毒只’의 逆名인 ‘只毒’과 음운이 유사하다. 신라의 지명 개정을 보면 경덕왕 16년(757)에 전반적인 지명 개정이 이루어진다. 지명 개정 방식은 옛 이름을 전하면서 보다 좋은 글자로 고친 音改, 옛 이름의 뜻에 한자로 번역한 義改, 3자 내지 4자로 된 것을 2자로 줄이는 省改, 옛 이름의 뜻이나 음에 관계없이 아름다운 글자로 고친 美改, 그 지역의 지리적 조건이나 지형에 의해 고친 地改 등처럼⁷⁰⁾ 다양하였다. 이 가운데는 드문 경우이지만 본래의 지명을 역으로 하여 새 지명을 만들기도 하였다. “聞韶郡本召文國 景德王改名”⁷¹⁾이 그 사례가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필자는 지담현의 본래의 명칭은 奈蘇毒只였는데 후일 奈蘇가 생략되고 毒只만 남게 되었고 그 후 ‘毒’의 뜻이 아름답지 못함으로 毒只를 역으로 하여 只沓으로 개칭되지 않았을까 한다. 이렇게 보면 나소독지는 오늘날 포항시 장기면에 해당된다.

한편 왕의 직할지 이외의 지역은 부 干支나 부의 유력자들이 主掌하였다. 부의 관할을 받는 지역을 추정하고자 할 때 단서가 되는 것이 나소독지 도사가 사인이 되어 于居伐, 蘇豆古利村, 奈音支村의 간지와 일금지 등의 말을 청취하였다는 사실이다. 이곳이 그의 관할 하에 있었다면 그가 굳이 이곳으로 올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이는 于居伐, 蘇豆古利村, 奈音支村 지역이 왕

70) 이영호, 앞의 논문, p.225.

71) 『삼국사기』 권34, 잡지3 지리1 상주 문소군조.

의 직할지가 아니라 부의 유력자가 主掌하는 곳임을 시사해 준다. 나음지촌은 신광현의 본래 이름이 東仍音縣이고⁷²⁾ 仍이 乃로도 표기된 것에서 미루어 보면 동잉음현(포항시 북구 신광면)으로 비정할 수 있다.⁷³⁾ 소두고리촌의⁷⁴⁾ 경우 古利는 오늘날 월성의 고리와 음운 상 연결되므로 잠정적으로 월성 고리 지역으로 비정해 둔다.⁷⁵⁾

2) 촌의 지배와 村干支-壹金知

중성리비에 의하면 蘇豆古利村에는 仇鄒列支干支와 沸竹休壹金知가 나오고 奈音支村에는 卜岳干支와 走斤壹金知가 나온다. 두 사람은 干支를 가졌고 나머지 둘은 壹金知를 지녔다. 이들은 지방의 村에 속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냉수리비에는 村主가 간지를 지닌 것으로 나온다. 촌주는 직명이 분명하다. 촌의 유력자가 촌주의 직을 받았다는 것은 이들이 관직체계 속에 편제되었음을 보여준다. 반면에 중성리비에는 村干支만 나올 뿐 촌주라는 직명은 보이지 않는다. 이는 이 시기까지 촌주를 축으로 하는 지방 관직 체계가 정비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들이 지닌 관은 외위라 부를 수 없다. 필자는 중성리비에 지방민이 지닌 官을 잠정적으로 村官으로 명명하는 바이다.

村干支의 성립 시기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이 『삼국사기』, 박제상전에

72) 『삼국사기』 권42 지리1 양주 의창군조.

73) 전덕재, 앞의 논문 97쪽 주)8 참조.

74) 소두와 고리촌을 끊어 읽은 후 고리촌만을 촌명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선석열, 앞의 논문, p.44 ; 이우태, 앞의 논문, p.82 ; 이문기, 앞의논문, p.22 ; 전덕재, 앞의 논문, p.97 ; 이영호, 앞의 논문, p.237 참조.

75) 나음지촌을 나령군(영주)으로, 고리촌을 나령군의 영현인 고사마현에 비정하는 견해(선석열, 앞의 논문, p.45)도 있다. 그러나 이 지역은 중성리비가 발견된 흥해 지역과는 너무 떨어져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오는 水酒村干 伐賣靺, 一利村干 仇里迺, 利伊村干 波老의 존재이다.⁷⁶⁾ 이 3명이 활동한 시기는 눌지왕 2년(418)인데 이들을 村主라 하지 않고 村干이라고 한 것은 중성리비와 맥을 같이 한다. 이로 미루어 보면 촌 간지는 418년 이전의 어느 시기에 만들어졌고, 441년을 거쳐 그 이후에까지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 3개 촌 가운데 수주촌은 예천에, 일리촌은 고령군 성산면에, 이이촌은 영주에 비정되고 있다.⁷⁷⁾ 이를 중성리비에 나오는 지명이 경주 인근인 포항 지역이라는 사실과 연계시켜 보면 촌 간지의 존재는 전국적인 현상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간지는 본래 국단계와 국연맹 단계에서는 국의 首長을 일컫는 칭호였다. 그렇지만 왕권이 보다 강화된 마립간 시기에 와서 국은 촌으로 편제되고 간지의 위상도 격하되면서 촌 간지가 되었다. 이 촌간지 아래에 두어진 官이 壺金知이다. 이 일금지는 냉수리비에도 나오는데⁷⁸⁾ 중성리비의 발견으로 그 존재가 확실하게 되었고 그 성립 시기도 5세기 전반으로 올려볼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마립간 시기의 촌에는 촌간-일금지로 구성된 지배 조직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촌간지-일금지로 이루어진 촌관 조직은 왕의 직할지에만 설치된 것이 아니라 부의 유력자들이 주관하는 촌에도 두어졌다. 앞에서 언급한 바이지만 부의 유력자들이 주관한 곳으로 판단되는 나음지촌과 소두고리촌에 촌간지-일금지가 보이는 것이 이를 말해준다. 이렇게 보면 왕의 직할지에 파견된 도사는 그 지역 촌관들의 보좌를 받아 지방을 지배하였고, 部長들도 部官을 통해 그 지역 촌관들의 보좌를 받아 자신들이 주관하는 지역을 다스렸을 것이다.

76) 『삼국사기』 권45, 열전5 박제상전.

77) 김철준, 1990 『한국고대사회연구』, 서울대 출판부, pp.137~138.

78) 냉수리비의 “村主與支干支 須支壺今智” 참조.

V. 경위-외위체계의 정비 방향 -맺음말에 대신하여-

중성리비는 냉수리비 및 봉평비와 일정한 연계성을 갖는다. 이 삼자를 유기적으로 연결시켜 보면 마립간시기의 모습이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다. 그 중의 하나가 관등제의 정비 과정이다. 필자는 맺음말에 대신하여 중성리비에 보이는 관등들이 그 후 경위와 외위로 정비되는 과정을 개략적으로 정리해 두기로 한다.

봉평비에는 중성리비와 냉수리비와는 다른 官制가 보인다. 먼저 왕경 육부인이 지닌 관등으로는 종래의 아간지, 일길간지, 거별간지, 나마 이외에 대아간지, 대나마, 소사제지, 소오제지 등과 邪足智가 보인다. 대아간지, 대나마는 아간지와 나마를 분화·격상시킨 것이고 소사제지와 소오제지는 여기에서 분화·격상된 대사제지, 대오제지의 존재를 짐작하게 한다. 그리고 사족지는 선저지로서 17관등제의 최하위 관등이 마련되었음을 보여준다.

봉평비를 토대로 하여 볼 때 경위체계의 정비는 두 단계로 진행되었다. 하나는 종래의 관등을 분화·격상시켜 상위의 관등으로 만든 단계이다. 이 과정에서 나온 것이 바로 아간지 바로 위의 대아간지, 나마 바로 위의 대나마, 소사지 바로 위의 대사제지, 소오지 바로 위의 소오제지이다. 다른 하나는 대아간지 위에 일별간지, 일척간지, 파진간지 등을 첨설한 단계이다. 일별간지, 일척간지, 파진간지의 명칭은 육부의 장 아래에 두어진 部官인 일별-일척-피일과 대응된다. 이는 이러한 관등이 종래의 部官에 干支를 붙여 만들어진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부관에 간지를 붙여 그 위상을 격상시킴으로써 탁부, 사탁부를 제외한 4부의 干支나 五干支는 더 이상 그 지위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한편 중성리비에는 촌의 지배조직과 관련하여 村官으로 촌간지-일금지만 보인다. 그러나 봉평비에는 下干支, 一伐, 一尺, 波旦(彼日)⁷⁹⁾, 一今智 등이 나온다.⁸⁰⁾ 이 하간지~일금지는 모두 지방인이 지니고 있으므로 外位라고

할 수 있다. 중성리비 및 냉수리비에 나오는 촌관과 봉평비의 외위를 비교해 보면 외위체계의 구성은 두 방향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나는 일벌, 일척, 피일 등 새로운 외위를 종래의 촌관 조직인 간지와 일금지 사이에 침설하는 형태이다. 이리하여 본래는 왕경인이 지냈던 일벌, 일척, 파단 등은 지방민이 지나는 외위로 전화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6부인의 위상은 격하되었고 그 결과 봉평비에 보이는 하간지 아래의 외위는 『삼국사기』, 외위조에 나오는 간-일벌-일척-피일-아척과 일치하게 되었다.

다른 하나는 干(干支) 이상의 외위는 간을 분화·격상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이를 짐작하게 하는 것이 下干支이다.⁸¹⁾ 하간지라는 명칭은 上干支를 존재를 짐작하게 한다. 그런데 봉평비에 나오는 거벌모라 지역은 한때 奴人村으로 불릴 정도로 그 위상이 낮은 곳이었다. 이러한 곳의 재지세력이 하간지를 받았다고 하면 이보다 위상이 높은 지역의 재지세력은 상간지나 그 이상의 외위를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는 상간지는 물론 그 이상의 외위가 이미 만들어졌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외위체계도 경위가 17관등으로 정비되는 시기에 완비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만들어진 외위체계의 운영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이 봉평비에서는 거벌모라 출신자들만이 하간지~피일 등의 외위를 받고 있고 아대혜촌,

79) 금석문 상에서 波는 彼와 혼용되고 있고 日과 日은 태양을 의미하므로 통용된다. 따라서 파단은 피일의 다른 표기로 보아야 한다. 이와는 달리 파단을 인명으로 보고 왜의 유력한 호족의 하나인 秦氏(하타씨)로 보는 견해(연민수, 1999 「고대 한일관계와 울진지방」 『한국 고대사회와 울진지방』, 울진군·한국고대사학회 참조) 있지만 문장 구조로 볼 때 외위의 이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80) 봉평비의 “居伐牟羅尼牟利一伐 弥宜智波旦 △只斯利一今智 阿大兮村使人奈尔利 杖六十 葛尸条村使人奈等利居△尺 男弥只村使人翼△杖百…居伐牟羅異知巴下干支 辛日智一尺” 참조.

81) 필자는 1997 「신라 17관등제의 성립과정」 『계명사학』 8집, 계명사학회, p.32에서 일금지가 하간지로 개칭된 것으로 파악하였는데 여기서 수정해 두는 바이다.

갈시조촌, 남미지촌의 유력자들은 使人의 직책을 띠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거벌모라가 거점 촌으로서 주변의 촌들보다 위상이 높았으며, 신라는 이러한 거점 지역 중심으로 지방사회를 운영하려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외위와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언급해 둘 것은 일금지의 행방이다. 일금지는 봉평비를 끝으로 금석문 상에서 뿐만 아니라 11등급으로 이루어진 외위 체계에서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일금지는 외위체계 성립과정에서 소멸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경주 안압지에서 출토된 유물의 하나인 금동판에 ‘義壺金知’라는 명문이 있었다고 한다.⁸²⁾ 안압지는 신라 문무왕 14년(674)에 만든 것이므로 이 유물의 연대는 안압지 축조 이후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일금지는 소멸된 것이 아니라 통일 이후에도 그 흔적을 남기고 있는 셈이 된다. 그렇지만 본 금동판의 실물은 아직 확인되고 있지 않고 또 탁본도 없는 상태여서 일금지의 존재를 쉽사리 단정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이 문제의 해결에는 금동판의 실물과 탁본을 찾아 확인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투고일 : 2010.4.8

심사개시일 : 2010.8.27

심사완료일 : 2010.9.3

82) 이 명문은 황수영, 1978 『韓國金石遺文(제2판)』, 일지사에 수록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하일식, 앞의 논문, pp.210~211 참조.

참고문헌

- 강종훈, 2009 「포항중성리신라비의 내용과 성격」 『한국고대사연구』 56
- 고광의, 2009 「포항중성리신라비의 서체와 고신라 문자생활」 『포항 중성리신라비』, 문화재청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 권인한, 2009 「포항중성리신라비의 어문학적 검토」 『포항 중성리신라비』, 문화재청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 김보상, 2009 「포항중성리신라비의 발견 경위와 향후 과제」 『포항 중성리신라비』, 문화재청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 김철준, 1975 『한국고대사회연구』, 지식산업사
- 김철준, 1990 『한국고대사회연구』, 서울대 출판부
- 노중국, 1988 『백제정치사연구』, 일조각
- 노중국, 1997 「신라 17관등제의 성립과정」 『계명사학』 8집
- 배용일, 2009 「포항중성리신라비의 발견 경위와 고대의 포항과 흥해」 『한국고대사연구』 56
- 변태섭, 1956 「신라관등의 성격」 『역사교육』 1집, 역사교육학회
- 서의식, 1994 『신라시대 ‘干’층의 형성 분화와 중위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선석열, 2009 「포항중성리신라비의 금석학적 고찰」 『포항 중성리신라비』, 문화재청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 심현용, 2009 「고고자료본 5~6세기 신라의 강릉지역 지배방식」 『문화재』 제42권 · 제3호, 국립문화재연구소
- 연민수, 1999 「고대 한일관계와 울진지방」 『한국 고대사회와 울진지방』, 울진군 · 한국고대사학회
- 이문기, 2009 「포항중성리신라비의 발견과 그 의의」 『한국고대사연구』 56
- 이영호, 2009 「흥해지역과 포항중성리신라비」 『한국고대사연구』 56
- 이우태, 2009 「포항중성리신라비의 내용과 건립연대」 『포항 중성리신라비』, 문화재청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 전택재, 2009 「포항중성리신라비의 내용과 신라 6부에 대한 새로운 이해」 『한국고대사연구』 56
- 차순철, 2009 「포항 흥해지방의 역사, 고고학적 고찰」 『포항 중성리신라비』 문화재청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하일식, 2009 「포항중성리신라비의 신라 관등제」 『한국고대사연구』 56

황수영, 1978 『韓國金石遺文(제2판)』, 일지사

Abstract

Dispute settlement process and operation of Six Bu(六部) System in Maripgan Period(麻立干時期) of Silla Dynasty through Pohang Jungseongribi(浦項中城里碑)

Noh, Choong-Kook

Pohang Jungseongribi(浦項中城里碑) was erected in Sinsa Year(辛巳年). The age of the erection has been assumed as A.D.501 by many scholars. However, the age of the erection also can be assumed as A.D. 441. The reasons following provide the evidence; the sixth letter of the first line is not ‘只’ but ‘中’. There is no definite proof that the eleventh letter of the second line is ‘德’. A new official title, Ilbeol(壹伐), appeared in Capital’ Six Bu(王京六部).

The contents of the Pohang Jungseongribi is about the process of settling disputes. The process is as follows; After clarifying who was directly involved in the affair, the person in charge dispatched from the central government delivered a judgement. The defendant was ordered to return the property which he took away from the plaintiff. The judgement delivered based on the testimony. After retrial, it is prohibited filing protest petitions. It shows that the trial system at the time was the second trial.

Silla Capital’ Six Bu(新羅六部), which was established in the Maribgan(麻立干) period, was operated with Takbu(喙部) and Satakbu(沙喙部) as the center. The status of the rest of Bu(部) fell.

Therefore, the people from Takbu and Satakbu were given preferential treatment; they were given official ranks such as Aganji(阿干支) and Saganji(沙干支). The people from the rest of Bu(部) only could be given Ganji(干支) or Jungganji(重干支)~Oganj(五干支) which are differentiated and elevated from Ganji.

Ilbeol(壹伐) appears in Pohang Jungseongribi which is the official rank below Ganji, the head of Modanbeoltak(牟丹伐喙) and Bonpatak(本波喙). It show that men of influence had management systems directly belonging to them. It consists of Ilcheok(一尺)-Piil(彼日)-Acheok(阿尺) including Ilbeol.

The area of Silla in the Maribgan period were classified into two groups - one which is under the direct control of the King, another which is under the control of Ganji from Bu. Each village(村) had management systems called Chonganji(村干支)-Ilgeumji(壹金支). The King dispatched an administrator called Dosa(道使) to the area under the direct control to govern. Chongan(村官) performed a role of assisting Dosa(道使). The rest of the area were in charge of Ganji from Bu.

Key words : Aganji(阿干支), Ilbeol(壹伐), Official Ranks for People Who Live in Capital City(京位), Official Ranks for People Who Live in the Provinces(外位), Chongwan(村官), Bugwan(部官), The area under the direct control of the King(直轄地), Testimony, Jungseongribi(中城里碑), Six Bu(六部), Judgement